
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

2021. 2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한 국 거 래 소
금 융 투 자 협 회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	2
1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 재정립	3
2.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다양화	5
3.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 활성화	7
4.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·관행 선진화	8
III. 기대효과	10
IV. 향후 추진계획	11
[별첨1]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추진 경과	12
[별첨2] 증권업 현황 및 평가	13
[별첨3] 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」 주요내용 요약	16

I. 추진 배경

-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
 -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IT·바이오 등 기술·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
 - ⇒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 필요
- 정부는 증권사가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'기업금융'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
 - * ['13년] '종합금융투자사업자(종투사)' 제도 도입, ['16년] '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' 제도 도입, ['19년] '기업성장투자기구(BDC)' 도입방안 발표
 - 이로 인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*되는 등 대형화가 촉진되고, IB업무**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역량도 강화된 모습
 - *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수 : ('13년) 5개 ('16년) 6개 ('19년) 8개
 - ** IB부문 수수료(조원) : ('14년) 0.9 ('16년) 1.3 ('18년) 2.6 ('19년) 3.4
- 그러나 여전히 벤처·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
 - 모험자본 공급보다는 투자자 신용공여, 부동산PF 채무보증 등 무난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
 - * 종투사 신용공여 비중('20.6월말) : (개인) 56.8% (기업) 42.7% (헤지펀드) 0.5%
 -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보다는 SPC 및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
 - * 종투사 중소기업 대출 구성('20.6월말) : (SPC) 4.8조원 (부동산 관련) 2.3조원 (일반 법인) 0.3조원

➡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

II.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

기본 방향

- ◆ 증권사가 혁신성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강화
 - **종합금융투자사업자**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관련 제도 개편
 -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**증권사**에 대해 기업금융 관련 신규업무 허용
 - 벤처·중소·초기 중견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**건전성 규제 개선**
 - IPO 전 과정에서 **주관사**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발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적 시장관행 형성을 유도

증권사의 IB 역할 재정립 및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

“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”

①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역할 재정립

-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 조정
- 발행어음 및 IMA 자산운용 규제 정비
-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 검토

② 증권사 기업금융서비스 다양화

- 초기 중견기업 대출 또는 혁신기업 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개선
- 벤처대출을 겸영업무 추가

③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제도 활성화

-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현재보다 확대
- 코넥스 상장 지원기능 강화 유도

④ IPO 제도 및 관행 선진화

- 시총 단독요건 신설 등 상장요건 개편
- 혁신기업 IPO 주관시 지분율 제한 완화
- 주관사의 상장 후 주가 관리노력 강화유도

1. 현황 및 문제점

- **선진형 투자은행(IB) 육성을 위해 ‘종합금융투자사업자’(자기 자본 3조원 이상, 이하 종투사) 제도를 도입(‘13.10월)**
 - 혁신기업을 위한 투·융자 등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**기업 신용공여(자기자본 100% 이내)를 허용**
 - * 제도취지 :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, M&A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업 신용공여 허용
 -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 확보*를 위해 **신규 자금조달 수단(발행어음·종합투자계좌[IMA**])을 허용(‘17.5월)**
 - * 조달자금의 50%(발행어음) 또는 70%(종합투자계좌)를 기업금융자산에 운용
 - ** 예탁된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자산 등에 운용하고,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
 - 종투사의 **신용공여 한도를 확대(자기자본 100%→200%)**하되, 추가 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(‘18.9월)
 - ※ 종투사 지정 현황: 미래에셋대우, 삼성, NH, 한국투자, KB, 신한, 하나, 메리츠(총 8개)
- **종투사 제도는 증권사가 기업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**
 -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**약 36배 증가** (‘13년 0.4조원 → ‘20.6월말 14.3조원)
 - 기업 신용공여 중 중소기업 대출이 51.7%(7.4조원)를 차지하여 **외형상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크게 증가**
- **그러나 신용공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**
 - 중소기업 대출(7.4조원)중 SPC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한 **순수 중소기업 대출은 0.3조원 수준** (전체 기업 신용공여의 2.0%)
 - * 중소기업 대출 구성(‘20.6월말) : (SPC) 4.8조원 (부동산 관련) 2.3조원 (일반 법인) 0.3조원

-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
 - * 종투사 기업신용공여(14.3조원)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.0조원('20.6월말 기준)
 - 현장에서는 추가한도가 부여되는 기업금융업무·중소기업 대출 범위가 협소하여 모험자본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

2. 개선 방안

①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대상 조정

- M&A 리파이낸싱 대출* (자기자본 30% 이내), 재무구조개선기업** 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
 - * 예) M&A 이후 3년 이내 리파이낸싱 대출은 전액(100%)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, M&A 이후 3~5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리파이낸싱 대출은 50% 인정
 - ** 예)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관련 대출
-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하고,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
 - 초기 중견기업*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
 - * 3년간 평균매출액 3,000억원 미만[조특법상 세제혜택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]
-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도 내 신용공여 허용 [자기자본 40% 이내(안) ← 자본시장법 개정('20.12월) 후속조치]

②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(IMA)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인구조 재설계

- 발행어음·IMA 기업금융관련자산 운용규제상 '기업'의 개념 정비
 - * SPC를 제외한 실체적 기업으로 협의 해석(단, PF용 SPC, SPAC, PEF 등은 실체적 기업으로 간주)하고, 금융회사는 기업 범위에서 제외
- 발행어음·IMA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 검토

☞ 요조치사항 :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증권사가 보유한 재원을 기업금융 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지속 정비
 - 증권사가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하지 않도록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순자본비율 제도로 개편('14년)
 - * 舊NCR : 영업용순자본/총위험액 → 新NCR : [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]/필요유지자기자본
 -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주된 업무인 종투사 영업모델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대출자산에 대한 NCR 규제 완화*('17.5월)
 - * NCR 산정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(100%)하지 않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(0%~32%) 하는 형태로 전환
 -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및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상향 조정
- 기회비용이 높은 혁신기업(중소·벤처·초기 중견기업)에 대한 대출·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제약 요인을 추가 개선할 필요
 - 성장단계에 따른 연속적 자금지원 필요성이 큰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·투자의 경우 건전성 규제 부담이 여전
 -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는 상장회사 투자에 비해 일률적으로 높은 NCR 위험가중치*(1.7~5배) 적용
 - * NCR 위험값 : 상장회사(4~12%), K-OTC(12%), 비상장회사(20%)
- 또한 종투사가 아닌 일반 증권사는 한정된 업무범위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금융 업무 수행이 곤란
 -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제한으로 인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움

2. 개선 방안

① 혁신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위해 건전성 규제(NCR)를 개선

- 벤처·중소기업 외 초기 중견기업(3년간 평균매출액 3,000억원 미만*) 대출·투자에 대해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**

*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

** NCR 산정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(100%)하지 않고 대출 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(0%~32%) 하는 형태로 전환

-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

*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하는 경우 주식집중위험액 산정 면제, '창업·벤처전문 PEF'와 소·부장법상 '전문투자조합' 출자지분 위험값 하향(20%→16%)

② 증권사가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업무 허용

-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여 중소형 증권사를 혁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

* 단, 기업대출을 위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위험인수 역량을 갖춘 증권사(중소기업 특화 증권사,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사)에 한하여 허용

< (참고) 벤처대출 개요 >

- (개념) 벤처대출(venture debt)은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의미
- (필요성) 은행 대출이 어려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전문성과 위험인수 역량을 지닌 증권사의 부채성 자금공급 활성화 필요
- (해외사례) 미국 벤처대출 시장규모는 VC 투자규모(842억달러)의 15% 수준인 약 126억달러로 추정('17년말 기준)

☞ 요조치사항 :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 특화 금융업무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‘중소기업 특화 증권사’ 제도를 도입('16.4월)
 - 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(고시)을 마련하고,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3차에 걸쳐 지정
 - * 관련 인센티브 : 중소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(성장금융·산은), P-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(신보·기보), 증권금융 대출한도·금리 우대 등
 -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제도운영 4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고, 자금조달 지원 및 자금회수 기회 제공
 - * (자금 공급) 1.0조원 (자금조달 지원) 3.2조원 (자금회수 기회) 1.7조원
 - ※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현황: 유진, 이베스트, 코리아에셋, 키움, IBK, SK(총 6개사)
- 그러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수가 한정되어 있고 기존 증권사들이 대부분 재선정*되고 있어 신규 증권사가 진입하기에 부담
 - * '20년 제3기에 선정된 6개사중 5개사가 제2기 중기특화 증권사에도 해당
-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

2. 개선 방안

- ① 보다 많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 수를 8개사 내외로 확대(현행 6개사)
- ②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코넥스 상장 지원기능 강화 유도
 - * 예)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활용시, 지정자문인 수수료 지원율 확대(現 50%)
→ '21년중 "코넥스 시장 활성화" 예산으로 12.3억원이 집행될 예정

☞ **요조치사항 :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운영지침 개정**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① (신규 상장기업) 기업은 신규 상장을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, 대외 신인도도 제고 가능
 - 성숙 前 유망기업의 조기 상장을 유도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여러 투자자들이 공유하도록 할 필요
- ② (주관사) IPO에 대한 규제·관행 등으로 인해 IPO 주관사가 자율성·책임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
 -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에 투자(5% 이상)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업 IPO 주관이 제한 → 혁신기업 발굴·육성 유인 부족
 - 기관투자자들의 보다 충실한 수요예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→ 수요예측 정확성이 낮은 측면*
 - * 코스피·코스닥 상장후 평균 등락율(18.~20, %) : (상장일 증가) 44.8 / (1개월후) 47.7
 - 상장 후 안정적 주가관리를 위한 주관사의 의지와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

2. 개선 방안

- ① (IPO 기업) 상장요건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 유도
 -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총 단독요건 신설(1조원) 및 시총·자기자본 요건 완화(시총 6천억&자기자본 2천억 → 시총 5천억&자기자본 1.5천억)
 - ‘혁신기업 국가대표’로 선정된 유망기업*의 상장 촉진방안** 검토
 - * 디지털·그린뉴딜·바이오·미래차·소재·부품·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3년간 1,000개+α개의 혁신기업 선정 → 금융지원 및 민간 투자여건 조성 추진
 - ** 예) 동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신속처리 지원(우선 심사 및 심사기간 단축 등)

② (IPO 주관사) 상장대상 기업의 '발굴·육성 - 수요예측 - 상장후 주가관리' 과정에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 유도

- (혁신기업 발굴·육성)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IPO 기업 지분율*을 혁신기업에 한하여 2배 상향(5%→10%)

* 선진국 IPO 주간 제한 지분율 : (美) 10%, (日) 50%

** 단, 금융투자협회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 혁신기업에 한함(예, 혁신기업 국가대표 선정 기업, 사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, 관계부처 규제샌드박스 특례 인정 기업 등)

※ (참고) 주관사가 상장일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·보유중이던 IPO 대상 기업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불가(금투업규정 제4-19조제5호)

- (수요예측 관행 개선) IPO시 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

- 가격발견·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'(가칭)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' 마련 (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정)

※ '(가칭)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'(안) 주요 내용

-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, 장기보유 확약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우대

- (상장후 주가관리) 상장후 주가에 대한 주관사의 관리노력 강화 유도

-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·장기 보유하는 '코너스톤 투자자 제도' 도입
-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'초과배정옵션*' 활성화 유도** → 관련 규제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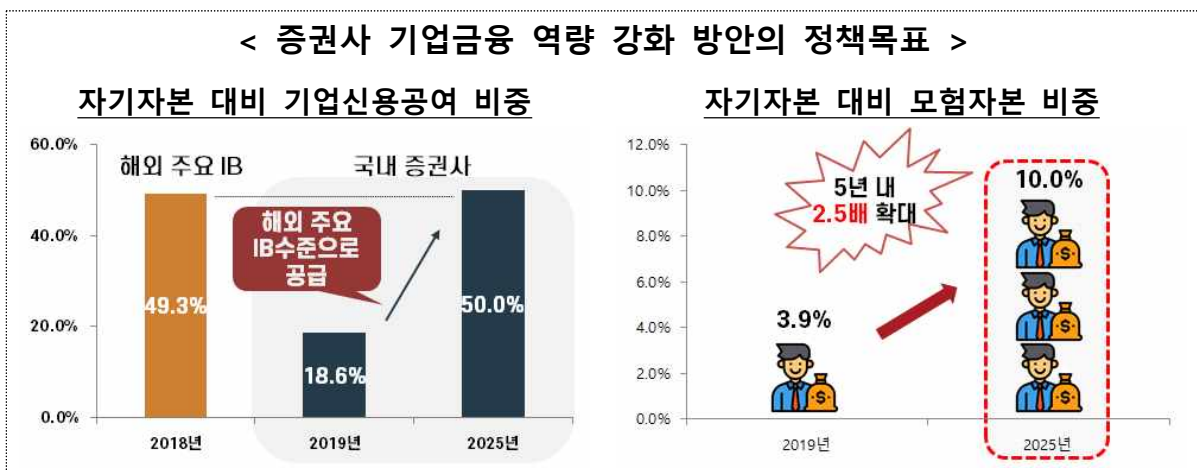
* IPO시 공모물량의 15%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·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배정후 시장매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

** 예) 상장후 주가 하락으로 장내 매수시 가격을 공모가의 90%→80% 이상으로 완화

☞ **요조치사항 : 세부방안 마련 및 인수업무규정 개정 등**

Ⅲ. 기대효과

- ① **(증권사)**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Key Player로서의 역할 확충
 - 중투사는 IPO, M&A 자문, 직접·간접금융 제공, 혁신기업 발굴 등 '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'로 지속 성장
 -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, 중소형 증권사는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'특화 증권사'로 변모
- ② **(기업)**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
 -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·벤처·초기 중견 기업 직접금융 활용 확대
 - 증권사의 자금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 가능
 - 증권사가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와 인큐베이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
- ③ **(시장)**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됨에 따라 자금순환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
 -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·육성하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주요 개선사항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

* 자본시장법 개정('21.2Q 중 입법예고), 자본시장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('21.2Q) 등

추진과제	조치 필요사항	추진일정
과제1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 재정립		
①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 조정	자본시장법·시행령 개정	'21.2Q~
② 기업금융관련자산 운용규제상 '기업' 개념 정비	금융투자업규정 개정	'21.2Q
③ 건전성 규제체계 개편방안 검토	방안 검토	'21.1Q~
과제2.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다양화		
①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	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	'21.2Q
② 벤처대출을 증권사 경영업무에 추가	금융투자업규정 개정	'21.2Q
과제3.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 활성화		
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회사 확대	중기특화 증권사 운영지침 개정	'21.2Q
② 코넥스 상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 유도	방안 검토	'21.1Q~
과제4.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·관행 선진화		
① 코스피 상장요건 개편	거래소 규정 개정	'21.1Q
② 주관 제한 기업 지분을 상향, 초과배정옵션 활성화	협회 인수업무규정 개정	'21.2Q
③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 제시	협회 모범규준 개정	'21.2Q
④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	별도 방안 검토·마련	'21.2Q

별첨 1

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추진 경과

◆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'초대형 투자은행' 및 '중소기업금융 특화 증권사'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

-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'종합금융투자사업자(종투사)' 제도 개선
 -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허용('13년)
 -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자금조달 수단(발행어음·종합투자계좌)을 허용하고 건전성 규제*를 정비('17년)
 - * NCR 산정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 하는 형태로 전환
 -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(자기자본의 100%→200%)하되, 추가 한도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로 한정('18년)

< 자기자본 규모별 종투사 업무 범위 >

자기자본		3조 이상 ~ 4조 미만	4조 이상 ~ 8조 미만	8조 이상
영 위 가 능 업 무	①기업 신용공여	○	○	○
	②전담중개업무	○	○	○
	③내부주문집행	○	○	○
	④단기금융업무	X	○	○
	⑤종합금융투자계좌	X	X	○

-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출현을 위한 기반 마련
 - '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'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된 증권사에 대해 중소·벤처기업 관련 업무수행 관련 인센티브* 부여('16년)
 - * 중소·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(성장금융·산은), P-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(신보·기보) 등
 - 비상장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 투자기구인 '기업성장투자기구(BDC)' 제도 도입방안 발표('1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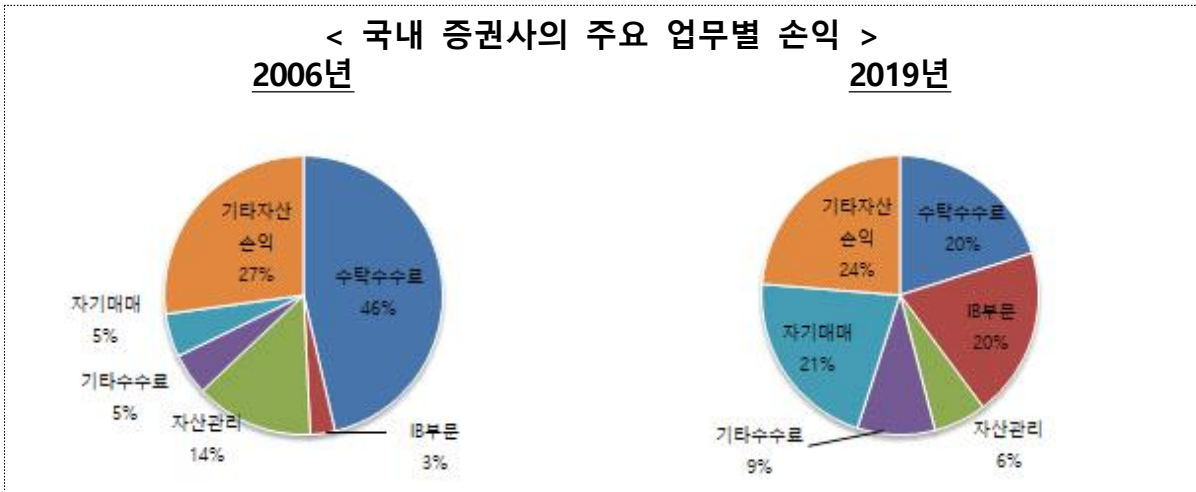
1. 수익성 및 건전성 측면

- (성과) 증권사의 수익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'19년 중 당기순이익(4조 9,104억원)과 ROE(8.3%)가 사상 최대수준 시현

구 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.3Q
당기순이익(조원)	1.7	3.2	2.1	3.8	4.2	4.9	4.5
ROE(%)	4.1	7.3	4.6	7.6	7.7	8.3	9.4(연환산)

- 증권사의 수익구조도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

* 최근 국내 증권사의 IB 및 자기매매 부문 수익 비중은 글로벌 투자은행과 유사한 수준



- 건전성 지표는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된 모습

* '20.3분기 기준 증권사의 평균 순자본비율(NCR)은 677.3%, 레버리지비율은 711.0%

- (한계) IB 부문 수익이 증가하는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외형적 성장을 보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

- IB 부문 수익 증가는 부동산PF 채무보증 확대*에 기인한 측면

* '19년 IB부문 수수료 3.4조원 중 채무보증관련 수수료가 1.5조원(44.5%)을 차지

- IPO 분야의 경우 차별성이 낮은 주관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수수료 경쟁*에 치우쳐 있는 상황

* 미국 IPO 주관업무 수수료는 7% 전후인 반면, 국내는 1~2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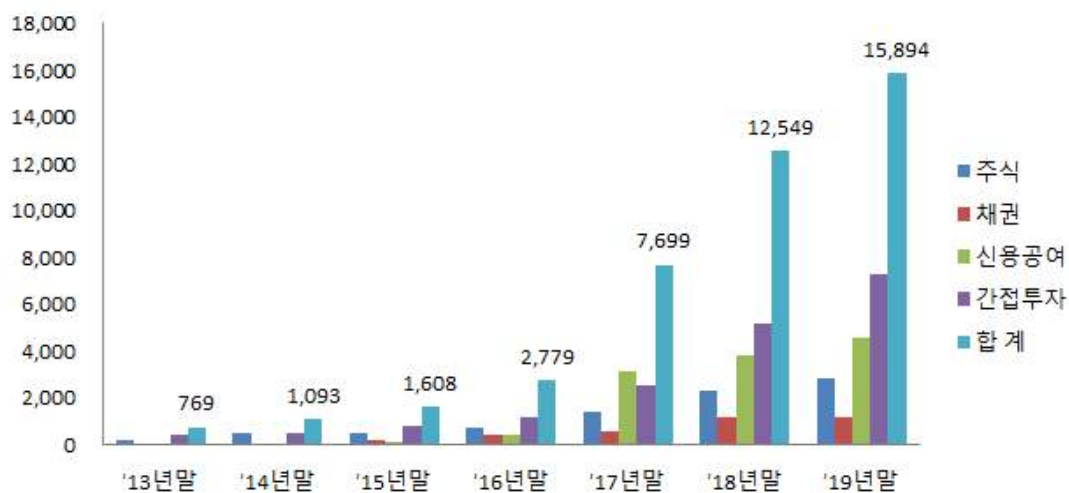
2. 모험자본 공급 측면

- **(성과)**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종투자(8개사*)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'19년말 기준 1.6조원으로, '13년말 769억원 대비 큰 폭(20.7배) 확대

* 종투자 지정 현황: 미래에셋대우, 삼성, NH, 한국투자, KB, 신한, 하나, 메리츠(총 8개)

- 자기자본 대비 모험자본 공급액 비중도 '13년말 0.4%에서 '19년말 3.9%로 증가

<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(단위 : 억원) >



- **(한계)** 국내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역량 등은 글로벌 투자 은행 대비 아직 미흡한 상황

-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(14.3조원)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.0조원으로 42.0%를 차지

- 종투사의 자기자본 대비 기업신용공여(부동산 제외) 비중은 평균 18.6%('19년말)로 해외 주요 IB*(49.3%, '18년말)의 37.7% 수준

* Goldman Sachs, Morgan Stanley, JP Morgan, UBS

- 종투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모험자본 공급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

* 발행어음 수탁잔액 12.9조원 중 실제 중소기업 투자는 929억원 수준('19년말 기준)

3. 서비스의 전문화·차별화 측면

- (해외) 미국 등 해외 투자은행의 경우 증권사의 업무·대상고객·규모별로 전문화·차별화된 모습
 - 전통적인 대형 투자은행은 대기업(포춘 100대)을 중심으로 IPO, M&A, PI 등 종합적인 IB서비스를 제공
 - 중소형 부티크 IB는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및 재무 자문 서비스 제공에 주력
 - 또한 빅데이터, AI 등 기술을 보유한 IT기업과 협업을 통해 백·미들 오피스, 트레이딩,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 활용

< 자본시장 관련 핀테크 적용 가능 분야 >

백·미들 오피스	트레이딩	자산관리	데이터 / 분석 / 리서치
√ 회계/보고·공시 √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√ 컴플라이언스 √ IR/의결권서비스 √ 리스크 관리 √ 청산/결제	√ 거래 소프트웨어·플랫폼 √ 데이터 하드웨어 √ FX거래 플랫폼 /네트워크 √ 지연 관리/측정	√ 온라인 개인 자산관리 √ 포트폴리오 관리 √ 어드바이저용 재무설계 툴	√ 빅데이터 분석 √ 데이터 통합/리서치 툴 √ 기업/주식 투자 리서치

- (국내) 자본규모, 전문영역 등에 관계 없이 대부분 증권사가 유사한 영업모델을 영위하여 비즈니스 다양성이 낮은 상황
 -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증권사가 종합 증권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성이 없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
 - * 56개 증권사 중 46개사가 종합증권업 인가 보유
 - IT기업과의 협업 및 업무위탁이 활발한 해외 IB 및 타 업권에 비해 핀테크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수준도 낮은 상황

◆ 증권사의 외형적 성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,
 ○ 전문화·차별화 등 질적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등 국민경제 기여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

별첨 3

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」 주요내용 요약 (IPO 제외)

		(현 행)	(개 선)
증투사	<p>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</p> <p>* 중소기업·기업 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는 추가한도 적용 (자기본100%내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관련</p> <p>· SPC 부동산 관련 포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금융업무 관련</p> <p>· 부동산 관련 포함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관련</p> <p>· (제 외)</p> <p>· (+) 초기 중견기업 관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금융업무 관련</p> <p>· (제 외)</p> <p>· (+) M&A 리파이낸싱·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</p>
	<p>기업금융관련 자산 범위</p> <p>*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50%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 운영 필요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금융관련 자산</p> <p>· SPC금융회사 대출 포함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금융관련 자산</p> <p>· (제 외)</p>
	<p>기업금융관련 자산 범위</p> <p>*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50%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 운영 필요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금융관련 자산</p> <p>· SPC금융회사 대출 포함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금융관련 자산</p> <p>· (제 외)</p>
중소형 증권사	<p>건전성 규제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NCR 부담 완화 대상</p> <p>· 중소·벤처기업 대출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NCR 부담 완화 대상</p> <p>· (좌 등)</p> <p>· (+) 초기 중견기업 대출</p>
	<p>겸영업무 범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겸영업무 범위</p> <p>· 기업금융관련 대출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겸영업무 범위</p> <p>· (좌 등)</p> <p>· (+) 벤처대출</p>
	<p>중소기업 특화 증권사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6개사 지정 (2년 마다 재지정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8개사 내외 지정</p>